

1. 개정이유

'21년 간부 처우개선 및 인사혁신처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변경된 「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」의 일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험근무수당 을종 4호 지급대상 확대(안 별표1)

- 1) '21년 처우개선에 따라 반기 6회 이상 재압실(고압챔버)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용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을종 4호 위험근무수당 대상에 병사를 포함

나. 특수업무수당 중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지급대상 확대(안 별표2)

- 1) '21년 처우개선에 따라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중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지급대상에 F-35 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체계 운용 및 사이버 보안 담당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

다. 특수업무수당 중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 용어수정(안 별표2)

- 1) 임용후 복무기간이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 지급하는 전투기 조종사(군사특기 F), 수송기 조종사(군사특기 C) 및 고정익항공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 지급자격의 복무기간 표현을 상위규정인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표현하기 위해 용어수정

라. 특수업무수당 중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(갑)1호 대상에게 지급하는
출동가산금 인상(안 별표2 비교)

- 1) '21년 처우개선에 따라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중 선박 및 함정 등
근무수당 (갑)1호 대상인 잠수함정의 승무원에게 출동일수 1일 마다
지급하는 출동가산금을 인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합의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을종의 번호 4.의 지급액(월액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관 이상: 125,300
대위 · 중위 · 소위 · 준위: 103,000
원사 · 상사 · 중사: 96,000
하사: 75,000
병사: 50,000

별표 2에 군인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 번호 5.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군인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란 제9호 중 “16년 이상 22년 미만에 해당하는”을 “15년을 초과하여 복무(임용 16년차부터 21년 차까지 한정한다)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 중 “10,000원”을 “11,000원”으로 한다.

번호5. 마. F-35 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체계 운용 및 사이버보안 담당임무에 종사하는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[별표 1]

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(제3조제1항 관련)

현		행	개 정 안		
을중	4. 반기 6회 이상 재압실(고압챔버)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료무원 및 모의 비행환경 적응 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기관	영관 이상: 125,300 대위 · 중위 · 소위 · 준위: 103,000 원사 · 상사 · 중사: 96,000 하사: 75,000	을중	4. 반기 6회 이상 재압실(고압챔버)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료무원 및 모의 비행환경 적응 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기관	영관 이상: 125,300 대위 · 중위 · 소위 · 준위: 103,000 원사 · 상사 · 중사: 96,000 하사: 75,000 병사: 50,000

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[별표 2]

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(제3조제2항관련)

현		행	개 정 안		
군인 등의 장려수당	5. 특수분야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(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) 가. 항공, 방공 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공중조기경보업무 · 요격관제업무 · 교통관제업무 · 비행추적	○ 군인 - 10년 이상 영관: 130,000 대위 · 중위 · 소위 · 준위: 120,000 부사관: 100,000 - 5년 이상 10년 미만 영관: 110,000 대위 · 중위 · 소위 · 준위: 100,000 부사관: 90,000 - 3년 초과 5년 미만 영관: 100,000	군인 등의 장려수당	5. 특수분야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(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) 가. 항공, 방공 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공중조기경보업무 · 요격관제업무 · 교통관제업무 · 비행추적	○ 군인 - 10년 이상 영관: 130,000 대위 · 중위 · 소위 · 준위: 120,000 부사관: 100,000 - 5년 이상 10년 미만 영관: 110,000 대위 · 중위 · 소위 · 준위: 100,000 부사관: 90,000 - 3년 초과 5년 미만 영관: 100,000

	업무 · 위성 운용업무 · 유도탄 교전 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 나. 전술항공통 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 제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 다. 무인항공기 부대에서 장 비운용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 라. 국방부장관 이 정하는 특수 임무부 대에서 신호 · 영상 · 계측기호 조 기경보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	대위 · 중위 · 소 위 · 준위: 90,0 00 부사관: 80,000 ○ 군무원 - 5급 이상 및 전문군무경력 관 가군: 110,0 00 - 6·7급 및 전 문군무경력관 나군: 100,000 - 8·9급 및 전 문군무경력관 다군: 90,000		업무 · 위성 운용업무 · 유도탄 교전 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 나. 전술항공통 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 제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 다. 무인항공기 부대에서 장 비운용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 라. 국방부장관 이 정하는 특수 임무부 대에서 신호 · 영상 · 계측기호 조 기경보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 마. F-35 항공 작전 임무수 행을 위한 정보체계 운 용 및 사이 버보안 담당 임무에 종사 하는 사람	대위 · 중위 · 소 위 · 준위: 90,0 00 부사관: 80,000 ○ 군무원 - 5급 이상 및 전문군무경력 관 가군: 110,0 00 - 6·7급 및 전 문군무경력관 나군: 100,000 - 8·9급 및 전 문군무경력관 다군: 90,000
	9. 임용 후 복무기 간이 16년 이상 22년 미만에 해 당하는 전투기 조종사(군사특 기 F), 수송기 조종사(군사특 기 C) 및 고정 익항공기 조종 사	월 1,000,000원		9. 임용 후 복무기 간이 15년을 초 과하여 복무(임 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 한 정한다)하는 전 투기 조종사(군 사특기 F), 수 송기 조종사(군 사특기 C) 및 고정익항공기	월 1,000,000원

				조종사	
비고	1.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(갑)의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출동일수 1일마다 10,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대상자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.	비고	1.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(갑)의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출동일수 1일마다 11,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대상자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.		